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 정 2018.01.02
개 정 2021.08.31

제 1 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(이하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,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(법 제 86 조,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

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

다.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 또는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재산 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,그 투자일임재산 또는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 4 조(수수료 부과 기준)

②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③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성과보수는 법 제 86 조, 동법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2.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3.투자일임서비스 또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98 조의 2, 동법시행령 제 99 조의 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77 조의 2 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류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④ 투자일임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<별지 제 1 호>와 같다.

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③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법 제 190 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의 계산방법,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 6 조(설명의무)

회사는 법 제 4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7 조(투자광고)

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 법 제 57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 조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한다.

제 8 조(공시 및 통보)

- ①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1 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 - ②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3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
-

부 칙(2018.01.02)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 년 1 월 2 일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8.31)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<별지 제 1 호>

1.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서비스

1)수수료 부과 기준

고객에게 부과하는 자문, 일임수수료는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수수료율을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하되, 계약자산 규모,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, 인정가능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구분	수수료율	산정방법	수취시기
기본수수료	상품별 책정	계약금액(평가금액) × 기본수수료율	매 3,6,9,12월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 27일 이내(후취)
성과수수료	상품별 책정	계약금액 × (위탁자산 수익 률 - 기준수익률) × 성과수수료율	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(후취)

2)수수료 체계

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품의 특성 및 투자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① 기본수수료만 지급
- ②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